

리포트

「PIC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관련 아시아지역 워샵」을 다녀와서

협약사항 이행 위한 부처간 협조 및 정보 전달체계 필요

올해 2월 24일 발효, 3월 현재 아시아 5개국 포함 61개국 비준 완료
협약 비준 독려 및 이행 위해 문제점·현황 파악, 활동사항 마련에 활용

아시아 지역국가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전통보승인(PIC)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주요 내용을 이해시키고 협약이행 및 비준을 위한 경험을 공유·교육하기 위한 워샵이 지난 3월 8일부터 5일 동안 중국 북경에서 열렸다. 협약에 포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진 이번 워샵은 모든 주제에 대하여 각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가 및 지역차원의 우선 수행사항을 제안하는 자리였으며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15개국 정부대표와 전문가로 초청된 한국, 독일, 스위스 등 화학물질심사위원회(ICRC) 및 FAO 아태지역 담당자, UNEP, FAO 등 국제기구 담당자, Pesticide Action Network(PAN), Croplife Asia, NGO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



였다. 우리나라는 협약의 국가지정기관(DNA)으로 지정되어 있는 환경부 및 농진청 담당자가 정부대표로, 국립환경연구원이 전문가로, 그리고 농약공업협회 및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산업체, 협약이행사항 준수해야

이번 워샵에서는 로테르담 협약의 주요 내

용 소개(협약 범위, 타 국제 협약과의 관계, 잠정 PIC 절차의 운영) 및 유해농약제제에 대한 “환경사고보고양식”, 금지 및 취급제한 물질의 최종규제조치 통보, 결정지침문서 및 수입국의 의무, 수출통보 및 정보교환,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주요 회의결과를 보면 잠정 PIC 절차 이행 및 협약 비준에 있어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으로는 화학물질 안전 및 로테르담협약 수행 사항에 관한 국가기관의 인식부족이 지적되었으며, 각 국가 내에서 우선 순위(highest priority)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약 및 산업용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기반이 미비하고 로테르담협약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인력, 기술, 재정 자원의 부족, 관련 부처간의 협조 및 정보전달 체계의 증진 필요(최종 규제조치 통보, 수입결정 의견서 작성 및 사무국 통보 등), 관련부처, DNA, 이해당사자(관세청, 화학 산업체, 수입자 및 수출자)간의 협조 및 정보전달 체계 확립과 증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국내 수입결정서 배포 및 수출통보의 필요성, 최종 규제조치를 취한 근거로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유(위)해성평가 수행능력의 부족, 농약 중독사고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보고체계의 미비 및 사고관련 정보를 정부(DNA)에 알려주는 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약 목적 및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 자원 확보, 협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의 능력 배양, 비준 후 국가가 협약의무를 이행

할 수 있는 국내기반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체계의 도입, 협약 비준을 위한 DNA 기술 지원, 협약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제고 등이 제안되었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조치 분야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기반 형성(Infrastructure)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일부 국가는 농약 및 유해성관리에 있어 후발 주자이므로 기술 지원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하였다.

즉,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을 조정하고 규제 할 수 있는 책임조치 및 위해성 평가(risk evaluation)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 화학물질 생산자가 유해성 자료를 마련하고, 동물시험에 근거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금지규제조치가 취해지기 전 해당물질 영향에 대한 자료의 부족, 중독사고 및 환경사고를 인지하기 위한 지식, 감독, 분석 능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협약이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과 관련되므로 세관담당자에 대한 기술지원/훈련/인식제고 등이 제기 되었고, 관세청을 위한 관세코드의 확인 및 표준화된 표시가 필요하다.

국가지정기관(DNA)에 있어서는 국가에 따라 복수의 DNA(예:농약 담당, 산업용화학물질 담당) 선정에 따른 복잡성 및 DNA를 개인 또는 기관으로 선정했을 때의 협조 체계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DNA의 효율적인



최 경 익

국립환경연구원 위해성평가과

역할 수행을 위한 기술 기반 확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아했다. 정보 전달 및 협조체계로 금지화학물질 및 농약에 대한 생산제조와 사용간의 협조체계, 관련 부처간의 협조체계, 관련 그룹에게 홍보 : 정부의 결정사항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즉, 정보의 배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DNA는 양자간다자간/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를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 산업체가 협약 내용을 인지하여 협약이행사항을 준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약이행 수단·신규체계 필요성' 검토

각 논의그룹에서 제기된 사항을 정리하면 고유해성농약제재(SHPF)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유해농약제재에 관한 협약문 내용 및 제출 검토 절차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나 DNA가 고유해성농약제재에 대한 제안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가지지 않은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이해하는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 사고를 인지하고 보고하는데 따른 문제점 및 한계로는 고유해성 농약제재의 영향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보고체계 미비 및 중독사고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중독 센터의 미흡이 지적되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환경보고 사고양식을 작성하는 방법 및 절차를 인지하였으나, 지역국가간 농약중독정보를 수집하는 기준 체계나 현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정보전달 체계 및 사고보고양식을 작성할 사람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종 규제조치 통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최종 규제조치통보에 대한 협약문 내용과 제출검토 절차 등을 이해하였으며 다만, 기술 및 인력 지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최종규제조치 통보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있어 문제점 및 한계로서는 이해 당사자들간의 조정체계 및 정보의 효율적인 배포, DNA 간 조정체계의 부족, 관련 담당부서간의 인식 부족,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인 규제 체계 미흡, 최종 규제조치가 위해성평가가 아닌 유해성평가에 근거를 둠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생성된 자료의 검증(통보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있어 인력 및 재정 지원의 부족, 통보 결정전에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절차가 시간이 소요됨)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결정지침문서 및 수입 결정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수입 결정에 대한 협약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PIC회람 부록Ⅳ에 수입 결정서의 역할은 수입 결정에 따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이 강조되었다. 수입결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및 한계로는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생산자, 사용자, 여러 관련 정부 부처 등)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조체계가 미비한 경우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입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부서 및 DNA를 위한 의무사항, 권한·체계관련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각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 결정을 위하여 DNA들간의 상대적인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예: 산업용화학물질관리 DNA 또는 농약관리 DNA가 해당 분야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 한계가

「PIC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관련 아시아지역 워샵」을 다녀와서

있는 경우 또는 DNA들이 다른 분야 목록에 수록된 물질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이 잔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책임부서와 이행자간의 인식 부족, 오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건부 승인을 규제하기가 어려우며 수입결정을 위한 적절치 않은 행정적인 자원 등이다.

수출통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수출 결정에 대한 협약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로는 DNA는 수출·입자에게 화학물질의 심각성 및 특정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출·입되는 화학물질의 예상 총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국 총회(COP)에서 DNA가 표준화 된 수출통보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양식의 작성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정보교환 및 정보 접근 분야에 있어서는 UNEP 사무국에서 PIC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로테르담 협약 비준에 있어서는 정부의 주요 의제에 포함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비준절차가 잘 계획되고 DNA와 다른 이해당사자들 간에 전달체계가 있는지 확인 방법, 협약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필요사항을 인지하여 협약이행을 위한 규제 수단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지 또는 신규 법적 체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관련정보 적극 홍보, 이행사항 준수

우리 대표단의 활동사항으로는 잠정화학물질심사위원회(ICRC) 위원인 전문가로 초청되어 자국내 금지/취급제한물질에 대한

“최종규제조치통보” 논의 분야에서 회의 진행 및 회의결과 작성, 본회의 보고 등 화학물질심사위원회 위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구체적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에서 각 논의의제에 대한 설명 및 우리 국가의 경험을 소개하고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였다. 회의결과는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로테르담 협약 비준 노력 및 이행을 위하여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차원의 우선순위 활동사항 마련에 활용될 것이다. 올해 3월 현재 61개국이 비준을 완료(‘04. 2.24 협약 발효)한 상태이며 아시아 지역 23개국 중 5개국(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북한, 몽고)만이 비준을 한 형편이어서 UNEP 및 FAO 사무국은 아직 비준서를 제출하지 않은 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하여 비준을 독려하였다.

우리나라도 협약 대상물질이 농약 및 산업용화학물질임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DNA로 지정되어 있는 환경부, 농진청,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역할분담 및 협조 체계 강화, 관련정보를 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협약 이행사항을 준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당사국 의무사항인 ‘자국내 금지/취급제한물질에 대한 최종규제조치’ 통보 및 협약 부속서Ⅲ에 추가 수록된 물질에 대한 ‘수입옹답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진행과 결과는 우리나라의 향후 대외 무역 및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농약정보**